

2020~2021년도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보고

2021.01

감사실

청렴감찰부

## I 배경 및 목적

- 국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공직사회 특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점검으로 국가적 코로나19 예방에 부응
- 연말연시 행동강령 위반 및 부정청탁 등 비위행위 발생여부 점검을 통해 선제적 예방효과 제고 및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II 감찰 개요

- 점검일시: 2020. 12. 30.(수) 09:00~18:00
- 감사연인원: 17명
- 중점 점검내용

분 야	점 검 항 목	비 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기강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발열체크, 재택근무) 지침 위반</li> <li>○ 부서회식 등 퇴근 이후 불요불급한 모임 운영 금지 위반</li> <li>○ 회사 출입 외부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및 출입통제 여부</li> <li>○ 임직원 일일 체온체크 관리대장 운영 및 사무실 방역 여부</li> </ul>	전사 방역관리 강화지침
직무관련 공직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행위</li> <li>○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향응 수수, 부당 사익 추구 등</li> <li>○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유연근무 위반</li> </ul>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직무태만 품위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절한 언행 및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 여부</li> <li>○ 직무해태·부작위, 형식적 업무처리 등</li> <li>○ 개인적 용무 등 부당한 지시 여부</li> <li>○ 음주운전, 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발생 여부</li> </ul>	
재난·사고 대응 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li> <li>○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한 중요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li> </ul>	

#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출근시간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태안발전본부 ○○○○처 ☆☆☆  
구 분 복무관리  
내 용

### 1. 업무 개요

우리 회사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 제도를 2013. 6. 28.부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태안발전본부에서는 도서 지역의 근무여건과 직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출·퇴근 시각을 조정한 근무체계를 주간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 1. 1.(신정 휴일)이 포함된 2020.12.28.(월요일)부터 2021. 1. 1.(금요일) 주간에는 휴일을 8시간 근무로 인정하는 근무체계를 [표 1]과 같이 시행 하였다.

[표 1] 태안발전본부의 변경된 근무체계

구 분	12.28.(월)	12.29.(화)	12.30.(수)	12.31.(목)	1. 1.(금)	합 계
사업·종업시간	08:30~18:00	08:30~18:00	08:30~18:00	08:30~16:00	09:00~18:00	-
1일 근무시간	8.5시간	8.5시간	8.5시간	6.5시간	8시간	40시간

※ 태안발전본부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공지 재구성

### 2. 관계법령·규정 및 판단기준

「취업규칙」 제22조(출근)에 따르면 직원은 사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3조(결근계 및 지참계)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참하였을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결근계 또는 지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각에 출근해야 함이 타당하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0.12.30.에 공직기강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태안발전본부 소속 직원 1명은 별도의 지참계, 유연근무원 등의 근무변경원 제출로 근무시각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08:30분인 시업시각보다 16분이 늦은 08:46에 출근하였다.

그 결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 관계부서(대상자) 의견 및 검토 결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태안발전본부 제◆발전처 ㉿㉿㉿㉿실 ●●●●부 소속 ㉿㉿㉿(1\*1\*1\*5\*)은 2020.12.30.(수) 시업시각이 08:30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08:46에 출근하여 근무시각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서, 향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태안발전본부장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사번)	위반일자	출근시간	기준	조 치
태안발전본부 제◆발전처 ㉿㉿㉿㉿실 ●●●●부	4직급(을)	㉿㉿㉿ (1*1*1*5*)	2020.12.30.	08:46	08:30	주 의

#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 시 정·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실 보안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서인천발전본부 ★★★★★부  
구 분 보안관리  
내 용

### 1. 업무 개요

우리 회사는 국가 보안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비밀문서의 정보 유출 방지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보안 및 비상규정」을 2010. 9. 17.에 제정하고 부서별 보안담당자로 부서장을 지정,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 ‘일일보안점검(이하 “보안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보안점검은 부서장의 임명을 받은 직원이 퇴근 시 실시하는 퇴근점검과 당직 근무자가 점검하는 야간점검으로 구분하여 매일 2회의 점검을 시행한 후 익일 부서장이 점검결과를 검토·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표 2]와 같이 서류 보관상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2] 보안점검표의 구성

일 자	서류 보관상태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단속 상태	문단속 상태	퇴사자 확인	당직자 확인	부서장 확인
	항목별 점검결과 O(양호),X(불량) 기록							

※ 서인천발전본부 보안점검표 재구성

### 2. 관계법령·규정 및 판단기준

「보안 및 비상규정」 제9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제4항에 따르면 사업소 보안담당자는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등에 관한 임무를 명시한 규정과 부서별 보안담당자인 부서장은 부서 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일보안 담당자’를 공문서로 지정하여 보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한 계획에 따라 부서 보안상태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인천발전본부 안전품질부의 보안점검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도 당직자의 보안점검은 적정하게 수행되었던 반면, 퇴근자의 점검은 2020. 10월 이후 총 4회<sup>1)</sup>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부서장 확인 서명으로 보안점검이 종결되게 처리함으로써 최초 누락한 2020.10. 4. 이후 퇴근자 점검이 지속하여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부서(대상자) 의견 및 검토 결과

서인천발전본부 ★★★★★부는 부서 보안점검이 누락하는 등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부서 직원의 퇴근점검은 누락되었으나 당직자의 야간점검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다는 의미로 확인 서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하여 당직자의 점검으로 보안관리의 적정성이 확보되었고, 이러한 보안관리 적정성에 대해 ‘적정함’의 판단으로 확인 서명을 하였다는 부서장의 의견은 수용 가능하나, 부서 직원이 퇴근점검을 시행하는 보안 점검 계획에 따라 당직자 점검과 별도로 퇴근점검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조치할 사항

서인천발전본부장은 ① 보안 및 비상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가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시정), ②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 누락내역: 2020.10.14., 10.20., 12.15., 12.17., 직원 퇴근점검이 누락됨